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장회사 분기배당절차 개선 〉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51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익배당은 결산 이후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즉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 한 뒤, 수개월 이후에야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임.

그런데 이 경우 투자자가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배당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다르고, 장기투자를 어렵게 하여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일”에서 “3·6·9월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배당금의 지급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2).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u>말일</u>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 ----- ----- ----- <u>말일</u> <u>부터 45일 이내의</u> ----- -----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u>20일</u>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정관</u> 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 ----- <u>1개월</u> ----- ----- <u>이사회</u> ----- -----.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 배당은 배당대가의 종류에 따라 현금배당, 주식배당 및 현물배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금배당은 배당금 지급시기에 따라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결산배당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중간배당²⁾, 분기말에 이루어지는 분기배당³⁾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분기배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상장회사는 연 3회 분기배당을 할 수 있음.

○ 분기배당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보호하고, 투자자에 대한 배당

1)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2)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 ⑥ (생략)

3)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투자를 유도하며, 결산기에 자금지급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⁴⁾

- 현행법은 상장회사가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기준일인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배당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배당금액’을 확정하는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69.8%인 558개사,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의 35.3%인 607개사가 각각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1개사,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25개사가 중간·분기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남.

[표1] 2023년 유가증권·코스닥 상장회사 배당현황

구 분	회사수(사)	배당기업(사)	중간·분기(사)	배당금(억원)
유가증권	799	558(69.8%)	<u>71</u>	410,874
코스닥	1,719	607(35.3%)	<u>25</u>	21,769

(자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STAFF), 2023. 12.)

- 그동안 우리나라의 결산배당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 한 후 다음 해 봄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은 법정 배당기준일 이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각각 배당금이 확정 되는 방식(先배당기준일 확정, 後배당액 결정)으로 운영되어 왔음.

4) 이상복, 「자본시장법」, pp.1432~1433, 2021.

- 그런데, 이와 같은 배당방식은 투자자로 하여금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이루어지는 배당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은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와 배당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⁵⁾

[표2] 주요국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비교

(단위: %)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22	23.9	36.0	48.3	47.1	41.6	36.9
2023	40.4 ¹⁾	37.0	41.7	55.0	48.4	36.4

주1) 2023년 분모(당기순이익)가 급감하며 높은 배당성향 기록

(자료: 블룸버그 MCSI Index 기준(해당연도 말)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작성)

- 참고로,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이고, 영국과 독일의 경우 배당기준일 전 배당예상액을 공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만 결산기말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하고 그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을 결정하고 있음.⁶⁾

□ 이에 법무부는 2023년 2월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① 「상법」 제354조 제1항7)에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배당결정)’와 ‘배당을

5) 금융위원회·법무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보도자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2023. 2.

6) 구체적인 사례는 【참고자료】 참조

7)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을 자(배당금수령)’를 구별하고 있고, ② 현재의 관행과 같이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동일한 주주가 행사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제약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先배당액 확정, 後배당기준일 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⁸⁾

반면,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先배당기준일 확정, 後배당액 결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가 배당액을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개정안은 현행법상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일”에서 “3·6·9월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의 의사회의 결의로써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배당투자

8) [법무부 유권해석] (자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2023.2)

□ 배당기준일을 배당을 결의하는 주총일 이후로 지정할 수 있음

현행 상법상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배당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음

- (i) 상법 제354조 제1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배당결정)’와 ‘배당을 받을 자(배당금수령)’를 구별하고 있음
- (ii) 현재의 배당 실무관행도 적법하나, 현재 관행과 같이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동일 주주가 행사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제약이 없음
- (iii) 결국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각 권리의 행사에 대한 기준일도 분리할 수 있음
- (iv) 상법 제354조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자로서의 권리’는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의미함
⇒ 상법 제354조 제3항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날’은 “배당금액과 배당을 받을 자가 정해지고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을 결의하는 주총일 이후로 지정하더라도 배당기준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함

활성화, 배당에 대한 투자자 관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배당 확대는 다시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 확대로 이어지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3] 분기배당 절차 비교(예시)

현 행		개정안	
3.31.	1분기 배당기준일 (법에서 3월 말일로 고정)	4.17.	1분기 배당기준일 공시 및 1분기 배당 이사회 결의 (3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개최)
	↓		<배당액 확정>
4.28.	1분기 배당 이사회결의 (3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개최)	5.2.	1분기 배당기준일
	↓		↓
5.17.	1분기 배당금 지급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5.17.	1분기 배당금 지급 (이사회결의일로부터 1개월내)

주: 실제 적용하는 경우 개별회사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등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한편, 개정안은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시기의 예외를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서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기준일과 배당금 지급일 간의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지급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상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⁹⁾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9)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의 처
02)6788-5111

【참고자료】 주요국 배당절차 현황¹⁰⁾

1. 미국 :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

- ☐ 주총이 아닌 이사회에서 배당액 및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며, 대부분 회사가 이사회에서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로 운영

2. 프랑스 :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

- ☐ 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배당 결의를 위한 주총일 이후 가까운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

3. 영국 : 배당기준일 전 배당예상액 공시

- ☐ 두 경우가 모두 존재하나, 어느 경우든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된 배당예상액을 배당기준일 전 공시

4. 독일 : 배당기준일 전 배당예상액 공시

- ☐ 실무상 주총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주총일에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배당하며, 배당예상액을 주총 1개월 전 공시

5. 일본 : 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

- ☐ 우리나라 현행 배당절차와 거의 유사하게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

< 2022년 주요기업 주총 및 배당기준일 현황 >

국가	회사	주주총회일	배당기준일	배당금 지급일
한국	삼성전자	3.16.	(전년도)12.31.	4.15.
	현대자동차	3.24.	(전년도)12.31.	4.22.
미국	Microsoft	9.19.(이사회)	11.17.	12.8.
	Apple	10.27.(이사회)	11.7.	11.10.
프랑스	BNP Pariba	5.17.	5.24.	5.25.
	LVMH	4.21.	4.26.	4.28.
독일	BMW	5.11.	5.11.	5.16.
	Volkswagen	5.12.	5.12.	5.17.
영국	British Telecom	7.14.	8.5.	9.12.
	Tesco	6.17.	5.20.	6.24.
일본	Mitsubishi	6.24.	3.31.	6.27.
	SoftBank	6.24.	3.31.	6.27.

10) 2022년 말 기준 (금융위원회·법무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보도자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2023. 2.)